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1월 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3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1. 3(수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담 당 자	배재형 사무관(044-203-3989)

산업부,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

-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 "팔지도 사지도 말아야!"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**한국가스안전공사**와 함께하여 **미검사 가스용품***의 **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**을 위해 **특별점검('21.11월~'22.3월)**을 실시한다.

*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허가 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받지 않고 생산하거나, 제39조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

□ 금번 특별점검은 ❶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**가스 온수매트**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**파티오 히터**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.

○ **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"가스 온수매트"는 미검사품**이며,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·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(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).



<'21년 적발된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>

- **가스 온수매트**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(기화온도 -0.5℃)이 잘 기화하지 않아 **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, 차량** 등의 **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**(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, 7명 사망)를 일으킬 수 있다.

- 참고로, 해당 제품과 유사한 **개방식 가스온수기**의 경우에도 CO중독 사고가 반복되어 **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·수입을 금지**하고 있다.

○ 카페, 식당,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**“파티오 히터”** 중 **수입된 일부 제품**은 **제조등록·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**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.



<파티오 히터>

- 제품검사 합격품은 **KC인증 마크(KC)로 확인**할 수 있으므로,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, **온라인 유통업체**(쿠팡㈜, 11번가㈜, ㈜인터파크 등)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**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** 요청할 계획이다.

○ **미검사 가스용품 제조·유통업체**에 대해서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라 벌칙*이 부과된다.

* **(불법개조품 판매)*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**(무허가 제조)*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**(미검사품 판매)**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**“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**하여 **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**할 계획이며,

○ **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**되어야 하며,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**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“**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배재형 사무관(☎ 044-203-39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